



건설업·벌목업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신고·납부기간 : 2022. 3. 31.(목)



안내 말씀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2022년 3월 31일(목)까지 전자신고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월 25일(금) ~ 3월 31일(목) 사이에는 전자팩스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목)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벌목업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목 차 _ CONTENTS

	한 눈에 보는 보험료 신고·납부	01
01	보험료 신고하기	02
	가. 전자신고	02
	나. 서면신고	06
	다. 보수총액 산정 요령(전자, 서면)	15
02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기	20
03	보험료 납부하기	21
04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24

한 눈에 보는 보험료 신고 · 납부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2021년 확정보험료 · 2022년 개산보험료 신고 · 납부하기

전자신고

<https://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후
사용(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산정된 2021년 확정보험료 · 2022년 개산보험료 입력 및 기재

임시저장 및 접수

납부서 발행

2022. 3. 31.(목)까지 시중은행(한국은행국고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23p 보험료 납부방법 참조)

서면신고

동봉된 2022년 보험료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사업장 관할지사(24~26페이지 참조)를 확인하여
FAX / 우편 / 방문 신고하기

동봉된 납부서에 납부금액 기재하기

※ 2022. 3. 31.(목) 도과 후 신고 · 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 · 개산 보험료의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의 10%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2022. 3. 31(목)까지 직접 신고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콜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 ·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보수총액 입력)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신고액	납부액	부족액 초과액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포함)	2021-01-01	~	2021-12-31			/1000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율은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을 제외									
합계										
고 용 보 험	실업급여	2021-01-01	~	2021-12-31			/1000			
		합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21-01-01	~	2021-12-31			/1000			
		합계								

①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①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관련하여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하는 일괄유기사업장 등 건설업 현장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021.1월~12월 : [직영근로자 보수 + 하도급근로자 수(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30%)]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 [월보수총액/21년 건설업 평균보수(4,330,442원)]

●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자동산정 초기화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input type="checkbox"/> 인원	<input type="checkbox"/> 보수총액	<input type="checkbox"/> 인원	<input type="checkbox"/> 보수총액	<input type="checkbox"/> 인원	<input type="checkbox"/> 보수총액
1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						
월평균						

➡ 월별인원, 월별보수총액 등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인원을 기재합니다.(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산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㉞ 개선보험료(보수총액 입력, 납부구분(일시납부/분할납부) 선택)

개선보험료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수추정액)	요일	개선보험료	납부구분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 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022-01-01	~ 2022-12-31		/100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checked="" type="radio"/> 분할납부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율은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제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01-01	~ 2022-12-31		/1000		
합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01-01	~ 2022-06-30		/1000	<input type="radio"/> 일시납부 <input checked="" type="radio"/> 분할납부
		2022-07-01	~ 2022-12-31		/1000	
	합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22-01-01	~ 2022-12-31		/1000	
합계						
확정보수총액 대비 개선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기재			<input type="radio"/> 근로자감소 <input type="radio"/> 휴업 <input type="radio"/> 기타			

- ①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2022. 7. 1.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됩니다.(인상 전·후 구분하여 입력)

④ 임시저장 및 접수(인쇄)

㉞ 작성된 보험료신고서 내용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접수' 클릭(접수완료)

임시저장
접수
초기화

알림

접수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㉞ 접수내역

접수번호	<input type="text"/>
민원서류명	<input type="text"/>
신고일자	<input type="text"/>
신고인	<input type="text"/>

납부서발행
반환금계좌신청이동
이전화면
서식인쇄

⑤ 납부서 발행

- 납부서 발행 클릭 후 인쇄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 회원조합 포함), 우체국에 납부하시거나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보험료 납부방법은 23p 보험료 납부방법 참조)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활용(확정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 주요 계정을 입력하세요)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사용순서

① 토탈서비스 접속

② 로그인 후 화면상단
보험료/신고 클릭

③ 보수총액 산정계산기
클릭

④ 보험구분 선택 및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후 조회

⑤ 결산서 주요계정 입력
펼치기 클릭 후
해당 사항 입력

⑥ 입력완료 후 보수총액
계산 클릭

⑦ 화면연계 클릭

• 결산서 입력을 통해 계산된 보수총액을 보험료 신고메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신고

일자리안정지원신청
보험가입신고
보험변경신고
보험소멸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관리
보수신고

3 **보험료신고**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10714)
보험료신고 보험료 산정 계산기(10714)
개인보험료 감정조정신청(10702)
임태부담금감산 신청(10703)
개발실적요율 조사서(10704)
상시근로자 현황표(10705)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10706)
자동이체신청(계좌)
자동이체신청(카드)
모바일 고지 신청(10708)
과납금 환급 계좌 신청(10709)
(부과)고용보험료 지원 신청(10710)
(자진)간접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10712)
코로나19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10714)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10714)
① 화면인쇄 안내 화면인쇄

+ 마이메뉴 추가
임시저장자료 조회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Check

- 보험료신고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는 보험료 저진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할 보수총액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수총액산정계산기에서 산정된 보험료는 일시납부에 대한 3%공제 및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시 경감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내용

구분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본사 보수총액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x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x30%)

4 **• 보험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임금채권)

• 사업장상태* 정상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년도* 2022 ▾

• 신고서구분* 확정및개산 ▾

• 사업장명*

조회

6 **보수총액계산**

초기화

5 결산서 주요 계정 입력 펼치기

7 **보수총액계산**

초기화

사업장명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사업주명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구분	납부할 금액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임금채권)	<input style="width: 60%;" type="text"/> 원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style="width: 60%;" type="text"/> 원
납부기간	<input style="width: 60%;" type="text"/>

7 화면연계

※ 기재항목 누락 시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통해 산정된 확정보험료와 실제확정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면신고

앞면

[별지 제23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는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22년도 □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

※ 문의 : 1588-0075

※ 전자팩스번호 :

※ 사업장작성자 :

(전화번호 :

)

접수번호	접수일	작성자명 :	(전화번호)
가 신고 사업장	사업장구분 : 일반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000-00-00000-0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자명칭 : 근로건설(주)	대표자 : 김복지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
	전화번호 : 052-000-0000	휴대전화 : 010-0000-0000	FAX : 052-000-0000

다 2021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④신고
	산재보험	일반		2021-01-01~2021-12-31	세부내용은 15~17p 참조	10.63/1,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01-01~2021-12-31	10/1,000			
계							1,084.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1-01-01~2021-12-31	16/1,000			1,1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1-01-01~2021-12-31	2.5/1,000			250.
계						1,350.	

▼ 아래⑥번 개선보험료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①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

라 2022년 개선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	⑨보험료율 ()	⑩개선보험료액 (⑧×⑨)	⑪분
	산재보험	일반		2022-01-01~2022-12-31	세부내용은 11p 참조	10.63/1,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01-01~2022-12-31	10/1,000			[]분
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01-01~2022-06-30 2022-07-01~2022-12-31	16/1,000			[]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2-01-01~2022-12-31	2.5/1,000			[]분
계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⑧ 개선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선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⑩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보험료신고서

(앞 면)

(전화 :)		처리기간 5일		
도로 340 0 E-mail :				
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액 (③-④)	⑦초과액(⑤-③)	
④신고액	⑤납부액		총당액	반환액
1,084,000				
1,084,000				
1,100,000				
250,000				
1,350,000				

보수총액(①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⑩분할납부 여부	㉓ 202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인원	보수총액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인원	보수총액	
[]일시납부	1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분할납부	2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일시납부	3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분할납부	4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5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6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7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8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9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10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11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12월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합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월평균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는 경우 뒷면의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㉑ 신고사업장

- 사업장의 일반적인 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바랍니다.
-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㉒ 202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1) 월별 인원, 보수총액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기재(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 2) 건설업 현장의 경우 :
직영근로자 보수+(외주비×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0%)로 산정
※ 외주공사비를 월별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월할 적용하여 산정
- 3) 월별인원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월 보수총액 ÷ 2021년 건설업 월평균보수(4,330,442원)
- 4)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㉓ 2021년 확정보험료

- ① 기재(세부내용은 15~17p 참조)
- ③, ⑤, ⑦(세부내용은 9~10p 참조)


㉔ 2022년 개산보험료


- ⑧ 기재(세부내용은 11p 참조)
- ⑩, ⑪(세부내용은 11p 참조)

마 건설공사		
공사명		
전체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금액명세	총공사금액	
	당년도 시공예정액	
	익년도 이월예정액	

마 건설공사

- 일괄사업장이 아닌 개별공사로 가입하여 연도이월된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및 금액기재

바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⑥)은 분할납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개산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 보험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구분	납부할 금액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 보험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바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개산보험료를 분기별로 분할납부 하시는 경우 기재 (세부내용은 12p 참조)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 올해 보험료에 총당이나 반환액이 있는 경우 기재 (세부내용은 13p 참조)

다 2021년 확정보험료(건설일괄 예시)

다 (2021)년 확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험료율 (일반)요율	③확정보험료액 (①×②)	개산보험료액		
						④신고액	⑤납부액	
다 (2021)년 확정보험료	산재보험 면역	일반	2021-01-01~2021-12-31	120,000,000	37.63/1,000	4,515,600	3,500,000	3,000,0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1-01-01~2021-12-31	10,000,000	37/1,000	370,000		
		계		130,000,000	-	4,885,600	3,500,000	3,000,000
	고용보험 면역	실업급여	2021-01-01~2021-12-31	120,000,000	16/1,000	1,920,000	1,100,000	900,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1-01-01~2021-12-31	120,000,000	2.5/1,000	300,000	250,000	200,000
		계		-	-	2,220,000	1,350,000	1,100,000

① 보수총액

- 7p 4항목 202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가 있는 사업장은 기재(기준보수로 산정, 16p 참조)

② 보험료율

-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경우 「(개별)요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요율」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에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1.0/1,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1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2021년도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해당사업장 한함)을 산재보험료율을 합산 표시하였으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외

③ 확정보험료액 = ① 보수총액 × ②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③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원 × 16/1,000 = 1,995,396원(원단위 이하 절사) ⇒ 1,995,39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확정보험료액 = 122,212,275원 × 2.5/1,000 = 305,530.68원(원단위 이하 절사) ⇒ 305,530원
- ※ 고용보험료(계) = 1,995,390원 + 305,530원 = 2,300,920원
- ※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계산 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합산한 후 원단위 이하 절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계산 시에도, 일반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원단위 이하 절사한 후 합산



확정보험료액과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비교를 통한

⑥ 추가납부할액, ⑦ 총당액 및 반환액의 작성 방법(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 확인 및 작성)

③ 2021년 확정보험료액이 ④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많은 경우

- (③-④)금액을 ⑥추가납부할액에 기재하고, ④의 ⑩개산보험료액(일시납부는 3%공제(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경감)후의 금액, 분할납부는 제1기 분할납부금액)과 합산 납부합니다.(21p 납부서 작성요령으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⑥개산보험료 납부액이 ④개산보험료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2021년도 체납보험료입니다.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 작성 사례 : 추가납부할액 1,000원(③-④)

① 보수총액	② 보험료율(일반)	③ 확정 보험료액	개산보험료액		⑥추가 납부할액 (③-④)	비고
			④ 신고액	⑤ 납부액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	올바른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0	10,000	잘못된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9,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1,000	올바른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1,000,000	10/1,000	10,000	9,000	8,000	2,000	잘못된 산정 (개산보험료 미납분 1,000원은 체납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함)

③ 2021년 확정보험료액이 ⑤ 2021년 개산보험료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

- (⑤-③)금액이 ⑩2022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시 5천원 추가경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당액에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③2021년 확정보험료액 : 752,000원, ⑤2021년 개산보험료 납부액 : 1,577,320원, ⑩2022년 개산보험료액 : 1,152,320원일 경우, 2021년 확정 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차액은 825,320원(1,577,320원 - 752,000원)이 되고, 2022년 납부할 개산보험료액은 3% 공제(34,560원, 1,152,320원×3% 원단위 이하 절사) 후 1,117,760원이 됩니다. 2021년 확정보험료액과 납부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인 825,320원이 2022년 납부할 개산보험료 1,117,76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액 금액을 옆과 같이 작성합니다.

⑦ 초과액(⑤ - ③)	
총당액	반환액
825,320	

총당액이란 기재후에 보험료신고서 뒷면 ④항목과납보험료 총당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⑤-③)금액이 ⑩2022년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일시납부를 선택하시고, 3% 공제한 2022년 개산보험료액(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경감)을 총당액에 기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라 2022년 개산보험료(건설일괄 예시)

라 (2022)년 개산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㉘보수총액	㉙보험료율 (일반)요율	㉚개산보험료액 (㉘×㉙)	㉛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	2022-01-01~2022-12-31	120,000,000	37.63/1,000	4,515,6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01-01~2022-12-31	10,000,000	37/1,000	370,000	[] 분할납부
계		-	130,000,000	-	4,885,600	
실업급여		2022-01-01~2022-06-30	60,000,000	16/1,000	960,000	[] 일시납부 [] 분할납부
		2022-07-01~2022-12-31	60,000,000	18/1,000	1,080,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2-01-01~2022-12-31	120,000,000	2.5/1,000	300,000	
계	-	-	-	2,340,000		
※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㉜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㉝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 근로자 감소 [] 휴업 [] 그 밖의 사유 :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㉞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㉘ 보수총액

- 2022년도 1년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 보수총액)입니다.
- ㉘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이 2021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㉜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㉜번)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신고 시 산재보험은 전년도 일반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 각각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기재
-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㉘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표시 부분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022.7.1.자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 전·후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기재

㉙ 보험료율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율은 임금채권부담금비율과 석면피해구제부담금률이 제외됩니다.
- 2022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16/1,000 → 18/1,000)

㉚ 개산보험료액 = ㉘ 보수총액 × ㉙ 보험료율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하고 ㉚번 확정보험료액란에 기재

예시

- ㉜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금액이 1,000만원이고 ㉘번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추정액이 800만원일 경우 ㉘번 란은 1,000만원으로 기재(800만원 ÷ 1,000만원 × 100 = 80% →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30% 사이)

㉛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

- ㉛분할납부 여부에 일시납부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하시면 3%공제 혜택(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이 있습니다 (㉛분할납부 여부 항목 [✓] 일시납부에 표시).
- 분할납부를 선택하시면 해당 보험료를 4기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고(㉛분할납부 여부 항목 [✓] 분할납부에 표시), 보험료 신고서 뒷면의 ㉞항목으로 이동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라의 ㉑분할납부 여부 항목에서 분할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선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개선보험료 납부기한 : 제1기-3.31 제2기-5.15 제3기-8.15 제4기-11.15)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할액⑥은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 OO 건설	
구분	개선보험료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335,780원	333,960원	333,940원	333,940원	333,94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1,955,390원	488,870원	488,840원	488,84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5,530원	76,390원	76,380원	76,380원
	계	2,260,920원	562,260원	565,220원	565,220원
2022년 3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 OO 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라의 ㉑2022년도 개선보험료(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을 4등분하되 제2기 이후 금액은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균등하게 기재하고, 전체금액에서 제2기~제4기 금액 합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기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1,955,390원 ÷ 4 = 488,847원이므로 원단위 이하 절사한 488,840원을 위의 서식과 같이 제2기부터 제4기 금액에 기재하고 개선보험료총액 1,955,390원에서 제2기~제4기의 합산금액인 1,466,520원을 뺀 488,870원을 제1기에 기재
- ※ 「개선보험료」는 앞면 ㉑번의 개선보험료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개선보험료에 총당하고 남은 잔액을 4회 분할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 유의 사항

- ▶ 개선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를 5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제2기(5월 15일 납기)부터 자동이체(계좌,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 기존 자동이체(계좌, 카드) 신청사업장도 2022년도 일시납부 보험료 또는 제1기(3월 31일 납기)보험료는 자동이체(계좌, 카드) 처리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서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총당이나 반환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뒷면 **바**항목 분할납부신청서의 1기 금액(전자신고 시 5천원 경감)을 기재하시고, 일시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앞면 **㉑**번 개산보험료액에서 3% 공제한 금액(전자신고 시 5천원 추가 경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개산보험료 일시납액(3% 공제 후)에 전액 총당되고도 잔여액이 남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액을 앞면 **㉗**번 초과액 란의 반환액에 기재하고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개인계좌, 법인사업장은 법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일시납부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729,760원	729,760원	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계좌번호 : 123-45-67890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예금주 : (주)○○건설

2022년 3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제1기를 총당하고 잔여액이 남을 경우에는 기재란을 수평으로 2등분하여 제2기 보험료액 및 남은 총당가능 금액을 기재 [이 경우 제1기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납부 제2기분 납부기간(2022. 5. 15)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분할납부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000-00-00000-0	사업장명	(주)○○건설
구분	납부할 금액	총당 신청액	총당 후 납부액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1기) 188,080원	(1기) 188,080원	0원
	(2기) 188,080원	(2기) 16,940원	172,14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원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원
	계	원	원
계좌번호 : 123-45-67890		반환금 입금 계좌 (근로)은행	예금주 : (주)○○건설

2022년 3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주)○○건설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보험료를 총당할 때에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상호 총당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험료 신고 방법('12.1.21. 이전 승인받은 사업장)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확정보험료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 202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 2021년 확정보험료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22년도 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 2022년 개선보험료(추정보험료)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주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022년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보수총액 : 31,200,000원(월2,600,000원×12개월)
-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분할납부하실 수 없으며,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78,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3p 보험료납부방법 참고)
- 보험료신고서 미제출 또는 보험료 미납부로 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22)년 개선보험료 (추정보험료)	구분		산정기간	㉠보수총액	㉡보험료율 (일반)요율	㉢개선보험료액 (㉠×㉡)	㉣분할납부 여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할납부
계							
실업급여							[] 일시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022-01-01~2022-12-31	31,200,000	2.5/1,000	78,000	[] 분할납부	
계		-	-	-	-		



보험료율·노무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건설업 본사	9/1,000	9/1,000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6/1,000	36/1,000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27%	27%
하도급 건설공사 노무비율	30%	30%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율	14/1,000	14/1,000
임금채권부담금비율	0.6/1,000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3/1,000	0.03/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1.0/1,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16/1,000	18/1,000(7월 1일부터 인상)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임금채권부담금비율·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은 보험료 신고서상의 산재보험료율에 합산 표시 됩니다.

다. 보수총액 산정 요령(전자, 서면)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건설공사(건설 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 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 ▶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대상 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가 있으면 분리 산정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

○ 2021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30%)



주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다르게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보수를 기재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합니다. 단, 해외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

• 건설일괄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신고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공사(발주자 겸 시공사) ② 원도급 공사 ③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

※ 원수급인으로 '하도급 준 공사(외주공사비) 중 하도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는 제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내역을 모를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조회 → 사업개시사업장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

○ 2021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수급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총액 산정방식

구분		보험가입자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식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원수급인	기준보수로 산정
	고용보험	건설기계사업주	확정 보수총액 산정 제외 (부과고지 보수총액 신고에 해당)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산재보험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에 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하도급 보수액”에 포함 예시) 장비임차료×30%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
	고용보험	건설기계사업주	확정 보수총액 산정 제외 (부과고지 보수총액 신고에 해당)

※ (산재보험)임대 및 도급계약 등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원수급인이 보험가입·납부

※ (보험가입자) 기존 콘크리트 제조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 적용)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변경

※ 장비사용료 및 재료비 등 건설기계 관련 계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수총액 산정 시 주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총액 신고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신고보수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기준보수로 적용
- '21. 1. 1. ~ '21. 6. 30. : 2,254,040원 - '21. 7. 1. ~ '21. 12. 31. : 2,479,444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 단위 근무 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
- (신고방법)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에 분리하여 보수총액 기재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안내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에 따라 건설업의 원수급인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조종사) 입·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 ➔ 산재보험 건설기계조종사 입·이직신고

○ 재무제표(예시)상 보수총액 산정

• 손익계산서 및 공무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 반영을 통해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 실제 보수총액 산정 시 예시되지 않은 계정과목에 대해 노무비 또는 하도급공사 누락 여부 확인

2021년 재무제표(예시)

구분	계정과목	계정총액	공제액	보수총액	비고
손익계산서	급여	1,000	100	900	대표이사급여 공제
	상여금	1,000	200	800	대표이사급여 공제
	복리후생비	700	-	700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소계	2,700	300	① 2,400	

구분	계정과목	계정총액	공제액	보수총액	비고
공무원가명세서 (분양원가 명세서 포함)	급여	1,000		② 1,000	
	잡급	1,000		1,000	
	외주공사비	7,000		2,100	외주공사비×하도급 노무비율 (2021년 하도급 노무비율 : 30%)
	재료비	4,000		1,200	
	용역비	1,000		1,000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소계	14,000		③ 6,300		

▶ 계정 총액에서 외주공사비에 해당되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확정 보수총액 산정

① 100% 원도급일 경우
확정보수 총액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2,400(①)	3,400(① + ②)
건설일팔	6,300(③)	5,300(③ - ②)

② 원·하수급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 보수총액
(원도급 공사비율 60%인 경우)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2,400(①)	3,000(① + [②×60%])
건설일팔	3,780(③×60%)	3,180([③ - ②]×60%)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는 확정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산정

※ 본사 상용직은 원도급 공사비율 미적용 / 현장 상용직은 원도급 공사비율 적용

※ 원도급 공사비율 : 각 현장별로 공무원가가 없어 원도급 공사에서 발행한 노무비와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하도급 공사부분이 부당하게 보수총액에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가명세서상 공사매출(공사수입금)을 기준으로 원도급 공사비율(원도급 공사총액 / 공사매출 총액)을 산정하여 보수총액 산정

○ 유의사항

①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구분	잘못 산정한 사례
재료비 등 다른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무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0%(‘21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 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
미분양 주택의 원가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공동도급공사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0%(‘21년 하도급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일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 누락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 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 보수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을 실시

② 3.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 가산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미징수
- 연체금**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체금 징수
 -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30일이 지난 때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50/1,000을 넘지 못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와 보험료 체납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 미징수
- 급여징수금** : 개인보험료 미납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10% 급여징수금 징수
 - 급여징수금의 한도는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3 하도급 공사현장의 확정 보수총액 산정방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모두 파악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 보수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 중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의 보수만 파악되는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공사금액(외주공사비)에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산정
- ※ 전체 하도급 공사현장의 실 보수가 파악되지 않음에도 일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실 보수’를 적용하고 파악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신고가 어려우시면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절차 |

-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 사무위탁신청서 ▶ 사업장 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검색 클릭) ▶ 접수
- ▶ 서면 :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센터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5 확정정산 제도 운영

- 공단에서는 국세청 결산자료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보수총액과 상이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기한까지 소급정산 실시

정산대상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산정한 추정보수(임금)총액이 차이나는 사업장
- 보험료신고서의 확정보수(임금)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임금)총액이 차이나는 사업장
-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선정절차

- 확정정산 계획 수립 ▶ 대상사업장 자료 구축 ▶ 확정정산 선정위원회 심의 ▶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 ▶ 확정정산 대상 통보 및 정산 실시

※ 확정정산 대상은 “확정정산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단위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알선이나 청탁은 하지도 받지 않습니다.

02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기

- 모든 기재사항을 작성하셨으면, 보험료신고서 서식 내의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확인하여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험료는 납부서 뒷면 납부방법을 확인하여 시중 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팩스 접수 (팩스번호 : 24~26p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안내 참조)

- 보험료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는 사업주께서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0502를 포함 11자리 번호를 눌러야 정상수신 가능
- 전자팩스 수신여부는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2. 2. 24. ~ 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모바일 팩스 : 별도의 팩스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편 접수

- '22. 3. 31.(목)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03

보험료 납부하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서 작성 요령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 3%공제는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 3%공제는 개산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확정보험료>

- ▶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액(신고서④번)이 2021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 앞면 ㉔항목 ⑥번 추가납부할 액을 기재
- ※ 기존 체납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확정총당액>

- ▶ 2021년 개산보험료 납부액(신고서⑤번)이 2021년 확정보험료액(신고서③번)보다 많은 경우
 - 신고서 앞면 ㉔항목 ㉑번 총당액을 (-) 값으로 기재

② 개산보험료

- ▶ 일시납부인 경우 : 신고서 앞면 ㉔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을 기재
- ▶ 분할납부인 경우 : 신고서 뒷면 ㉔항목 제1기 보험료액을 기재

③ 개산 3% 공제액

- ▶ 일시납부인 경우에만 기재
 - 신고서 앞면 ㉔항목 ⑩번 개산보험료액 × 3%하여 산정된 금액(원단위 이하 절사)
- 예시) 707600원 × 0.03 = 21,228 → 21,220원.
 196,550원 × 0.03 = 5,896 → 5,890원
- ※ 분할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④ 전자신고 경감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보험료 신고를 할 경우 개산보험료에서 5천원을 경감
- ▶ 전자신고시 보험료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1.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3. 고용보험 자영업자

납부할 금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 납부서상 ① + ② - ③ - ④
- 납부자용 영수증과 수납기관용 영수증서상의 납부할 금액란에 동일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th> </tr> <tr> <td>전자납부번호</td> <td>바코드</td> </tr> <tr> <td>0000-0000-00-0-0-000000</td> <td></td> </tr> </table>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th> </tr> <tr> <td>전자납부번호</td> <td>바코드</td> </tr> <tr> <td>0000-0000-00-0-0-000000</td> <td></td> </tr> </table>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td> <td>-19,200원</td> </tr> <tr> <td>② 개산보험료</td> <td>105,950원</td> </tr> <tr> <td>③ 개산 3% 공제액</td> <td>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원</td> </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 <td>86,75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9,200원															
② 개산보험료	105,9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6,7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초과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지급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table border="1"> <tr> <td>수입징수관계자</td> <td></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86,750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2022년 3월 31일</td> </tr> </table>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table border="1"> <tr> <td>수입징수관계자</td> <td></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86,750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2022년 3월 31일</td> </tr> </table>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6,75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 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총액(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총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th> </tr> <tr> <td>전자납부번호</td> <td>바코드</td> </tr> <tr> <td>0000-0000-00-0-0-000000</td> <td></td> </tr> </table>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th> </tr> <tr> <td>전자납부번호</td> <td>바코드</td> </tr> <tr> <td>0000-0000-00-0-0-000000</td> <td></td> </tr> </table>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td> <td></td> </tr> <tr> <td>확정보험 또는 확정총당액</td> <td></td> </tr> <tr> <td>실업급여</td> <td>6,000원</td> </tr> <tr> <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td> <td>8,000원</td> </tr> <tr> <td>소계</td> <td>14,000원</td> </tr> <tr> <td>②</td> <td></td> </tr> <tr> <td>개산보험료</td> <td></td> </tr> <tr> <td>실업급여</td> <td>707,600원</td> </tr> <tr> <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td> <td>196,550원</td> </tr> <tr> <td>소계</td> <td>904,150원</td> </tr> <tr> <td>③</td> <td></td> </tr> <tr> <td>개산 3% 공제액</td> <td></td> </tr> <tr> <td>실업급여</td> <td>21,220원</td> </tr> <tr> <td>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td> <td>5,890원</td> </tr> <tr> <td>소계</td> <td>27,110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5,000원</td> </tr> <tr> <td>납부할 금액 (①+②-③-④)</td> <td>886,04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 또는 확정총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보험관리번호 : 123-45-67890-0 소관 :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 사업주명 : △△△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 또는 확정총당액																																								
실업급여	6,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8,000원																																							
소계	14,000원																																							
②																																								
개산보험료																																								
실업급여	707,6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96,550원																																							
소계	904,150원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	21,22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890원																																							
소계	27,11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886,0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제는 개산보험료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개산보험료 10만원이상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table border="1"> <tr> <td>수입징수관계자</td> <td></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886,040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2022년 3월 31일</td> </tr> </table>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table border="1"> <tr> <td>수입징수관계자</td> <td></td> </tr> <tr> <td>납부할 금액</td> <td>886,040원</td> </tr> <tr> <td>납부기한</td> <td>2022년 3월 31일</td> </tr> </table>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수입징수관계자																																								
납부할 금액	886,040원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담당자 : △△△ 전화번호 : 1588-0075 자료기준일 :																																				

▶ 납부서 작성 예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이 있는 경우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액)이 있는 경우																																																	
2021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 10,000원, 2022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일시 납부), 전자신고	2021년도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할 액 10,000원, 2022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2021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 액) 10,000 원, 2022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일시 납부), 전자신고	2021년도 확정보험료 초과액(총당 액) 10,000원, 2022년도 개산보험료 100,000원(4회 분할납부)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td> <td>10,000원</td> </tr> <tr> <td>② 개산보험료</td> <td>100,000원</td> </tr> <tr> <td>③ 개산 3% 공제액</td> <td>3,000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5,000원</td> </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 <td>102,00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td> <td>10,000원</td> </tr> <tr> <td>② 개산보험료</td> <td>25,000원</td> </tr> <tr> <td>③ 개산 3% 공제액</td> <td>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원</td> </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 <td>35,00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td> <td>-10,000원</td> </tr> <tr> <td>② 개산보험료</td> <td>100,000원</td> </tr> <tr> <td>③ 개산 3% 공제액</td> <td>3,000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5,000원</td> </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 <td>82,00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r> <td>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td> <td>-10,000원</td> </tr> <tr> <td>② 개산보험료</td> <td>25,000원</td> </tr> <tr> <td>③ 개산 3% 공제액</td> <td>원</td> </tr> <tr> <td>④ 전자신고 경감</td> <td>원</td> </tr> <tr> <td>납부할금액 (①+②-③-④)</td> <td>15,000원</td> </tr> </table>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02,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35,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100,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3,000원																																																		
④ 전자신고 경감	5,000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82,000원																																																		
구분	금액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총당액	-10,000원																																																		
② 개산보험료	25,000원																																																		
③ 개산 3% 공제액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15,000원																																																		

※ 확정보험료는 3% 공제 또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개산보험료도 분할 납부할 경우 3%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 보험료 납부기간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가능
 - ※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
- 입금 가능 시간 : 납부기간 내 평일 07:00~23:00
 -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인터넷지로(뱅킹) 납부

- 납부은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 및 「거래은행 홈페이지(공과금 납부 선택)」로 접속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가능 시간 : 월~금, 00:30~23:30 (단, 일부은행의 경우 365일 07:00~23:30이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 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신용카드 납부 안내

- 대상 : 모든 신용카드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0.8%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 0.5%**
- 납부방법
 - 1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사회보험 메뉴 ▶ 산재보험료(연납/자진납) 또는 고용보험료(연납/자진납)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클릭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선택) ▶ 납부처리
 - 2 공단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안내

- 전자고지 대상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제2~4기 분할납부서, 자동계좌 이체 출금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서면)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제출
- 납부방법 :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납부
우리은행 고객이 아닌 경우 ▶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납부
- 납부수수료 : (뱅크페이 납부시) 납부액에 따라 110원~1,100원의 수수료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분할납부 보험료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안내

-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한 사업장
 - '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2년도 개산보험료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 보험료는 2기부터 자동이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 개산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기부터 자동이체를 적용받으려면 **5월 6일까지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계좌** :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콜센터(☎1588-0075)로 유선신청 (유선신청은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 또는 법인 직원 가능)
 - **신용카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

04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 지사 안내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	가입지원1부 : 서울 종로구, 동대문구 가입지원2부 : 서울 중구	0502-223-3101 (종로구, 동대문구) 0502-223-3201(중구)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1부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9층	서울 강남구	0502-345-3101
서울서초지사	가입지원부	0672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16층	서울 서초구	0502-217-2101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1부	0551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웰다타워빌딩 14층	서울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502-343-3100 0502-343-4101
서울성동지사	가입지원부	04782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거영빌딩 4층	서울 성동구	0502-460-1201 0502-460-2100
서울서부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04108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 구프라자 10층, 12층	가입지원1부 : 서울 마포구 가입지원2부 :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0502-207-3100(마포구) 0502-207-4100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07254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4층	가입지원1부 :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가입지원2부 : 서울 영등포구	0502-216-3100(강서구, 양천구) 0502-216-4100(영등포구)
서울북부지사	가입지원부	02098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리베로빌딩 2층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502-844-1200 0502-844-3100
서울관악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오피타워) 6층, 7층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502-210-4100 0502-210-3100
의정부지사	가입지원부	11754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57(금오동)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0502-828-3100
남양주시사	가입지원부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7층 (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0502-828-3110 0502-828-4110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4873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7층 (초량동, 아모레퍼시픽빌딩)	가입지원 1부 : 동구, 사하구, 서구, 중구 가입지원 2부 : 남구, 영도구	0502-661-3100 (동구, 사하구, 서구, 중구) 0502-661-4100(남구, 영도구)
부산중부지사	가입지원부	4724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1동 91-5) 동아빌딩 12층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0502-801-2100
부산동부지사	가입지원부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부산합동청사 2층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0502-550-3101
부산북부지사	가입지원부	46548	부산 북구 기차로 12 7층 (덕천동, 이수빌딩)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02-318-3100
창원지사	가입지원1부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3층 (신월동)	창원시 의창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0502-268-3100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44661	울산 남구 문수로 330 공작빌딩 4층	울산	0502-226-3100 0502-218-3100
양산지사	가입지원부	50635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2층	경남 양산시, 밀양시	0502-380-4100 0502-380-3100
진주시사	가입지원부	52725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88 아이비타워 7층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함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0502-766-3100 0502-760-4100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530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미래메디칼빌딩 6층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02-001-3100 0502-320-4100
김해지사	가입지원부	50935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6 2층	경남 김해시	0502-849-3108
대구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4194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빌딩 8층	대구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0502-599-3101 0502-601-1200
경산지사	가입지원부	38621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도료빌딩 7층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0502-819-2101 0502-608-1201
대구서부지사	가입지원부	42645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감삼빌딩 9층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0502-609-4100
대구북부지사	가입지원부	41590	대구 북구 원대로 130, 4층(침산동)	대구 북구, 서구, 경북 군위군,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02-607-3100 0502-607-4100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37685	포항시 남구 대이로23 KT&G 3층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02-288-3100 0502-288-4100
구미지사	가입지원부	39281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348-525-8(구미국가산업단지 지역에 한함)	0502-479-3101
영주지사	가입지원부	36102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02-639-3100 0502-608-1203
안동지사	가입지원부	36711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 (CGV 안동점)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02-850-3100 0502-680-4102
경인지역본부	가입지원2부	21556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구월동 1143-4) 미추홀타워 7층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502-077-3101
인천북부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21417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가입지원 1부 :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불은면 삼산면, 양도면 가입지원 2부 : 서구, 강화군(강화읍 교동면, 불은면, 삼산면 양도면 제외)	0502-530-3100 (가입지원 1부) 0502-540-4100 (가입지원 2부)
수원지사	가입지원부	1631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3층	경기 수원시	0502-231-1206
부천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다성빌딩 9층	경기 부천시, 김포시	0502-650-4100
안양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1400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8층(안양동)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0502-463-3101 0502-463-4101
안산지사	가입지원1부	1553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3층(가입지원1부)	경기 안산시, 시흥시	0502-481-3101
성남지사	가입지원1부	1342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대덕프라자2차 6층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0502-719-3100
평택지사	가입지원부	17774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 타워 8층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502-669-3100
고양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1041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빌딩 4층	경기 고양, 파주시	0502-810-3100 0502-810-4100
화성지사	가입지원부	1830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9층	경기 화성시	0502-231-4109
용인지사	가입지원부	169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	경기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0502-719-4110

지사명	부서명	우편번호	소재지	관할구역	전자팩스번호
광주지역본부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6192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양동) KDB생명빌딩 8층	광주(남구, 서구), 화순군, 곡성군 광주(동구, 북구), 구례군, 담양군	0502-608-3100 [광주(남구, 서구), 화순군, 곡성군] 0502-608-4100 [광주(동구, 북구), 구례군, 담양군]
광산지사	가입지원부	62363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우산동) KT우산빌딩 1층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502-702-2100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550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3길 21-12 (KT동전주 5층)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0502-600-3105 0502-600-4100
익산지사	가입지원부	54552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2층 (어양동)	전북 익산시, 김제시	0502-839-3100 0502-839-4100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54026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2층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502-450-3101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5873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목포KT빌딩 5층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장흥군	0502-240-4100
여수지사	가입지원부	59700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전남 여수시, 광양시	0502-680-1202 0502-680-3100
순천지사	가입지원부	57934	전남 순천시 백강로 367, 5층(성보메디컬타워)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0502-240-4103
제주지사	가입지원부	632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	제주특별자치도	0502-718-3100 0502-710-4100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2부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7층	대전(유성구제외), 충남 금산군	0502-301-1203
유성지사	가입지원부	34068	대전 유성구 반석로9 더존타워8층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0502-820-2100 0502-820-1200
청주지사	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28481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가입지원 1부 : 상당구, 청원구, 옥천군 보은군 가입지원 2부 : 서원구, 흥덕구, 괴산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0502-229-3100 (상당구, 청원구, 옥천군, 보은군) 0502-229-4100 (서원구, 흥덕구, 괴산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충주지사	가입지원부	27428	충북 충주시 증원대로 3434 (봉방동)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502-840-3100
천안지사	가입지원부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층	충남 천안시, 아산시	0502-629-3100 0502-629-1201
보령지사	가입지원부	33433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층(동대동)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0502-849-3100 0502-849-4100
서산지사	가입지원부	31998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3층(예전동, 오성빌딩)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0502-849-3101
강원지역본부	가입지원부	26387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 2층(무실동)	강원 원주시, 횡성군	0502-340-3100
춘천지사	가입지원부	24415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스스프라자빌딩 7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가평	0502-301-3100
태백지사	가입지원부	26008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1 3층	태백시, 삼척시	0502-311-3100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25492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한국빌딩 4층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0502-330-4100
영월지사	가입지원부	2623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30 KT 3층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502-371-3100

전자팩스
수신 확인

수신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팩스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므로 접수 폭주 시간대인 13시~17시를 가급적 피하여 전송하여 주시고
(‘22. 2. 24. ~ 3. 31.) 기간 중에는 전자팩스 수신에 대한 자동회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 안내

-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비율 (인상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비율)
	인상 전	인상 후	
근로자	16/1,000	18/1,000	사업주와 1/2씩 부담 (근로자 0.9%, 예술인·노무제공자 0.8%)
예술인·노무제공자	14/1,000	16/1,000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주요 개정 내용

-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산재보험급여액을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자업주의 산재보험급여액에 포함하여 보험수지율 산정

- ①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관리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③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단,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액에 각각 1/2씩 포함)
- ④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 사망 사고 다발 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액 축소

- 대상 : ①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 중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 적용기준 :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적접 고용한 근로자+수급인·관계수급인의 근로자+파견근로자)의 수가 3명 이상으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비율이 “인하”에 해당하는 사업
- 개별실적요율 : 산재보험료율의 인하비율을 아래 비율만큼 줄여 산정한 요율을 적용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사망자수	3명	4명	5명	6명 이상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 공표 비대상	-40%	-60%	-80%	-100%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 공표 대상	-50%	-70%	-90%	-100%

- 시행일 : 2022. 01. 01.(2023년도 개별실적요율부터 적용)



고용·산재보험 증명원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방법

- 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 확인

- ②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공공·금융기관
(교육청, 세무서, 은행 등) 및 공공장소(터미널, 기차 및 지하철역, 공항, 여객항, 병원, 마트 및 백화점) 운영

2022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내용 및 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 ('21년) 220만원 미만 → ('22년) 230만원 미만
- 지원제외 근로자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지원대상

-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건설·별목업 사업장
- * 건설·별목 본사 및 건설공사, 별목 현장 근로자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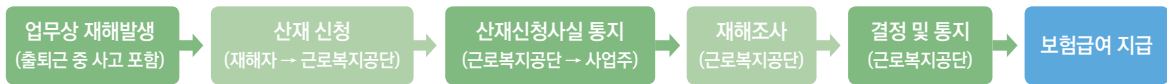
지원내용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의 80%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절차

- 법정신고기한('22.3.31.)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22.5.2.까지 지원신청 →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하거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지원신청

산재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1. 업무상 사유로 요양 중인 경우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제출
※ 요양 중인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에서 대행신청 가능
2. 요양이 종결된 경우 : 요양비청구서 및 소견서 제출
3.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 제출

〈승인 결정 후 보험급여 청구〉

- 요양급여(요양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산업재해조사표(고용노동부) 제출 의무도 없음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등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70% 지급	요양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 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 하는 경우 휴업 급여 대신 지급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1~14급)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	산재장해인(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부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재해자, 의료기관, 약국)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포상금(최고 3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정수급 신고자 및 신고된 내용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 신고방법
 - 부정수급신고센터 신고전화 : 052-704-7474
 - 온라인 신고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 서류 신고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8층 부정수급신고센터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

- 내용 : 임신 중 모(母)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적용 : 법 시행일(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나 ①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 ②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③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인정
- 보험급여 : 자녀의 수급권을 인정하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되, 장례비는 유족에게 수급권을 인정
- 신청방법
 - 관할지사 접수(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 ☎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퇴직연금사업 안내 ● 가입문의 : ☎ 1661-0075

-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어떤점이 좋은가요?
 - 기업도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적립운용방식의 선택 및 퇴직 시 연금vs일시금 선택 수령 가능합니다.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재원을 보존합니다 : 이직을 하여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공)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에서 적립금 자산관리를 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안내

- 지원대상 월 평균보수 : ('21년) 219만원 이하 → ('22년) 230만원 미만
- 지원금액 : ('21년) 최대 월 5만원(5인 미만 : 7만원) → ('22년) 최대 월 3만원
- 신청기한 : 2022.6.15.(수) ※ 지급기간 : '22년에는 6월까지만 지급(6개월분)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
- 고령자(만 55세 이상) 고용 사업주,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 월 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1일 105,600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매월 초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단, 신청 당시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도 지원 가능)
-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단,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2.6.15.(수)
※ 20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2022년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행사 기간 : 보수총액신고 : '22. 2. 3.(목) ~ '22. 2. 28.(월) • 보험료신고 : '22. 3. 2.(수) ~ '22. 3. 21.(월)
- 경 품 : 스마트폰 2명 • 스마트워치 15명 • 해피머니 모바일 상품권 등 790명
- 당첨자 발표 : 2022년 4월 8일(금), 오전 10시 ※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SMS 발송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청렴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 · 공익
신고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고객소통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근로복지공단